

「 '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지원사업」

모 집 공 고 (추 가)

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·수입하는 경우 '30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.

[별책] 등록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* '27년까지 10톤 이상~100톤 미만, '30년까지 1톤 이상~10톤 미만

한국환경공단은 중소·중견기업의 등록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며, '27년까지 등록유예 물질(10~100톤 제조·수입)은 '26년도에 착수하여야 등록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* 등록 준비기간 2년, 등록 비용(컨설팅 및 자료 확보 비용) 소요

1. 지원대상: `30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공동등록 협의체

- (대상물질) 3단계(10톤 이상~100톤 미만) 및 4단계(1톤 이상~10톤 미만) 등록물질
- (대상협의체) 협의체 내 최대 등록톤수가 1톤 이상 100톤 미만이고 등록대상인 중견·중소기업*을 1개사 이상** 포함한 협의체
 - * 단,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취급하지 않음
 - ** 구성원이 1개사인 협의체도 제출 가능하나 추후 지원 시 구성원 수가 적어 후순위로 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음
- (제외대상)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(물질) 등록완료 또는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 이력이 있는 물질
 - (협의체) 컨설팅 기관이 협의체 대표자인 협의체

2. 지원내용: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컨설팅 지원

- 협의체 내 중소·중견 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무료 지원
 - ※ 본 사업은 등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공단에서 선정하는 컨설팅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등록 시 제출하는 자료확보 방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 - ※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한 협의체 구성원은 등록서류 공동제출에 필요한 컨설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, 해당 구성원의 개별 작성서류는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< 세부 지원내용 >

가. 협의체 구성

- 협의체 구성원 모집, 대표자 선정

나. 등록계획 수립

-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대상 및 등록대상 선별을 통한 등록전략 수립
- 협의체 협약 체결 및 하위사용자 용도 조사

다. 데이터 갭 분석

- 물질의 형태별, 톤수별 제출 요구 시험자료 확인
- 기존자료(무료·구매) 존재 여부 및 확보 가능 여부 확인
- 자료 제출 간소화 항목 및 시험면제조건 해당 여부 검토
- 시험자료 확보 계획 수립(공유·구매·생산 결정)
 - ※ 시험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을 통해 생산한 자료는 반드시 등록에 활용하여야 함
 - ※ 척추동물시험 최소와 원칙에 따라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으로 지원

라. 시험자료 확보

- 무료자료 확보, 해외자료 구매 및 시험자료 생산

마. 위해성 자료 작성(10톤 이상만 해당)

-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및 위해성 자료 작성
 - ※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결과는 '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집' 개발에 활용되거나 산업계에 배포될 수 있음

바. 등록신청

- 등록신청서 작성 및 등록 서류 제출

사. 사후관리

- 대표등록, 구성원 등록 및 심사대응 등에 필요한 사후관리

3. 제출방법

- (제출기간) '26. 5. 11.(월) ~ 잔여물량 2배수 접수 시까지
- (제출주체) 협의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
 - ※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cee.go.kr)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정보 기준
- (제출방법) 구글폼을 통한 서류 제출
 - (제출서류) 지원신청서,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, 협의체 구성원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, 협의체 구성원의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(해당 시)
- (제출처)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(02-6050-1303, 1304, 1306)

4. 유의사항

- '5. 지원조건'을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협의체에 책임이 있음

5. 지원조건

- ※ 지원사업에 선정 시 아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함
- 지원사업에 선정된 **협의체 대표자**는 담당 기관의 요청 및 등록자료 공동제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**직접 성실히 응하여야** 하며,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**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**
- 협의체 대표자의 변경 및 구성원의 추가·변경·탈퇴는 가능하나, 지원기간동안 **신청 당시의 지원조건을 유지**하여야 함
 - ※ 예: 선정 이후 해당 톤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 없을 시 지원조건 미충족으로 제외
- 협의체 대표자는 **구성원에게**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및 지원조건 등을 **안내**하고 이를 협약서에 반영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- 협의체는 공동등록에 따른 비용 분담 시 **지원대상인 중소·중견기업에 추가적인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**
 - 중소·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한 경우는 용도 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 자료 작성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(공동 작성한 위해성 자료를 재생산하여 제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)
- 협의체는 공동자료 확보(구매·생산 등)에 소요되는 비용 및 행정비용 등 등록 전 과정에 소요되는 **총 비용의 상세 내역**을 공단에 **보고**해야 하며, **모든 세부내역 및 비용 공개를 원칙**으로 함
 - 후발등록자 등 등록비용내역 요청 시 컨설팅 지원내역 및 등록에 수반되는 상세 내역을 모두 공개하며, 후발등록자가 등록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함

- 협의체는 후발등록자로부터 공동등록에 소요된 비용(공동등록 컨설팅 및 공동자료 확보) 외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- 협의체는 유해성 정보 DB 구축 자료, 위해성 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(K-Chesar),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(ESD&T) 등 **정부 사업 인프라를 활용**하여야 함
- **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결과**는 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어 **향후 산업계에 배포**될 수 있음(단,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)

6. 지원물질 선정기준

- (**우선순위**) 협의체 구성원 수, 협의체 내 중소기업 수*, 지원대상 제조·수입 무게범위에 해당하는 협의체 구성원 수 및 국내 제조업체 수가 많을수록, 국가 생산 유해성 정보 DB 상 분류표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우선 지원

*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

